

제241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개최일시 : 2015. 11. 6.(금) 10:00
- 심의안건 : 총 6건(조례안 5, 규칙안 1)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4건

| 연번 | 의안번호 | 제출부서 | 심 의 안 건 | 심의결과 |
|----|------|-------|---|------|
| 1 | 61 | 감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
| 2 | 62 |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 3 | 63 |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4 | 64 | 사회복지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5 | 65 | 사회복지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6 | 66 | 청소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의 결 서

1. 의안번호: 제61 ~ 66호

2. 의 안 명

| | | |
|---|---|---------|
| ①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 정 가 결 |
| ②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 정 가 결 |
| ③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
| ④ |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가 결 |
| 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 안 가 결 |
| 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

3. 제 출 자: 복지환경국장 외 1

4. 의결주문: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4건, 부결 건, 심의보류 건

5. 의결이유: 회의록 참조

6.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4조
위 안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부의장:

(행 정 관 리 국 장)위원:

(기 획 경 제 국 장)위원:

(복 지 환 경 국 장)위원:

(도 시 관 리 국 장)위원: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위원:

(보 건 소 장)위원:

위 정 분 입 니 다

2015. 11.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인

제241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 | | | | |
|---|------------------------------------|------|--------------|-------|---------------|
| 의안번호 | 제61~66호 | 제출부서 | 감사담당관 외 3 | 제 출 자 | 복지환경국장 외 1 |
| 회의개최 및 의결일시 | 2015. 11. 6. (금) 10:00 | 회의장소 | 부구청장실 | 참석위원 | 5인 |
| 심의안건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외 5건 | | | 의결내용 | 별지 참조 |
| 2015. 11. 6.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left;"> <p>참석자</p> <p>의 장</p> <p>부 의 장</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 서명 생략</p> <p>“의결서 참조”</p> </div> </div> | | | | | |

회 의 록

□ 회의개최 개요

가. 일시: 2015. 11. 6.(금) 10:00

나. 장소: 부구청장실

다. 참석자: 조례규칙심의위원, 소관부서장 및 팀장

라. 배석자: 기획예산과장, 의회법무팀장

□ 진행 및 의결사항

○ 간사

- 지금부터 제241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는 부의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진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은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 의회사무국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부의장

-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빼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자원팀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준칙이 온건지?

○ 복지자원팀장

-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 제3조제5호와 관련하여, 여관, 모텔, 여인숙을 조사해 봐서 그런 가족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 제5조의 준용 규정은 당연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 규정은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자원팀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제5조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라고 되어 있는데, “정하는 바”란 표현보다는 “따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예산이 얼마 증가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 기존 9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부의장
 - 다른 구도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 현재 9개구가 개정했습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팀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 인터넷 신청시도 19호 서식으로 하는지?

○ 청소행정팀장

-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에 별도로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 부의장

- 제19조제2항제1호의 문구를 “방문신청 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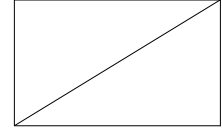
- 제8조제2항에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이라는 문구는 구지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부의장

- 제8조제2항의 문구를 정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압축기 관련 내용은 빼고 “봉투 종류별 무게상한을 별표 6에 따라 제한한다”고 하고, 한가지 궁금한 점이 이렇게 제한한다고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 청소행정팀장
 - 저희가 이와 관련하여 15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부의장
 - 그럼 “이를 위반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의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의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이상으로 제241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 | |
|-----------|-------------------------|
| 의안번호 | 제61호 |
| 의결 년월일 | 2015. 11. 6. (제241회) |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제출자 | 감사담당관 고재풍 |
| 제출년월일 | 2015. 11.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자율적인 운영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부분은 감사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범위에 의회사무국을 추가하고, 감사대상 기관별 상이한 종합감사 실시주기를 3년으로 단일화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 제명을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에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으로 변경
- 나. 자체감사 적용범위에 의회사무국을 추가 규정
- 다. 감사대상 기관별 상이한(2년~3년) 종합감사 실시주기를 3년으로 단일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9. 14. ~ 10. 4.) 결과 : 의견있음(별첨)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수정가결안》

| 개 정 안 | 수 정 가 결 안 |
|--|---|
| <p>제3조(적용 범위) -----</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u>자체감사</u>-----</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의회사무국 <신 설></u></p> | <p>제3조(적용 범위) -----</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u>자체감사</u>-----</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감사”를 “자체감사”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감사담당자등”을 “감사담당자 등”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행정감사”를 “자체감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회사무국

제5조제1항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3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15조제1항 중 “감사담당자등”을 각각 “감사담당자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중 “행정감사”를 “자체감사”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하고, “행정감사”를 “자체감사”로 한다.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남,여)”로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중 “소직”을 “본인”으로 하고, “행정감사”를 “자체감사”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 “성명 (남,여)”를 “성명”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광진구 <u>행정감사</u> 규칙</p> <p>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담당자”란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u>감사담당자등</u>”이란 감사담당관과 제1호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광진구 <u>자체감사</u> 규칙</p> <p>제2조(정의)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u>감사담당자 등</u>”이란 -----. 3.----- |
| <p>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u>행정감사</u>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3. 구 금고 4. 구비 보조 단체 및 기관 5.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p><u><신 설></u></p> | <p>제3조(적용 범위) ----- ----- ----- <u>자체감사</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p><u>6. 의회사무국</u></p> |
| <p>제5조(감사 실시주기) ① 제4조 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 본청 및 보건소 : 2년</u> 2. <u>동 주민센터 : 3년</u> 3. <u>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2년</u> | <p>제5조(감사 실시주기) ① ----- 실시 주기는 <u>3년으로 한다.</u></p> <p><u><삭 제></u> <u><삭 제></u> <u><삭 제></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u>감사담당자등</u>은 감사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u>감사담당자등</u>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u>감사담당자등</u>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u>감사담당자등</u>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p>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u>감사담당자 등</u> ----- ----- ----- ----- ----- ----- -----.</p> <p>② <u>감사담당자 등</u>----- ----- ----- -----.</p> <p>③ <u>감사담당자 등</u>----- ----- ----- -----.</p> <p>④ <u>감사담당자 등</u>----- ----- ----- -----.</p> |
| <p>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u>감사담당자등</u>은 감사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p> | <p>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u>감사담당자 등</u>----- ----- ----- -----.</p> |

| 현 행 | 개 정 안 |
|-----|-------|
|-----|-------|

《별지 제3호 서식》

| 확 인 서 | | | | | | | |
|-------------------|-----|----|-------------|---------------------|------|------|----|
| 1. 제 목 : | | | | | | | |
| 2. 내 용 : | | | | | | | |
| 3. 관련자 | | | | | | | |
| 구 분 | 소 속 | | 직 위 (직급) |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관리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 | 행위시 | 현재 | | | | | |
| 행위자 | | | | | | | |
| 1차감독자 | | | | | | | |
| 2차감독자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확인자 | 소속 | | 직 | 성명 | (인) | | |
| 입회자 | 소속 | | 직 | 성명 | (인) | | |

《별지 제3호 서식》

| 확 인 서 | | | | | | | |
|-------------------|-----|----|-------------|---------------|------|------|----|
| 1. 제 목 : | | | | | | | |
| 2. 내 용 : | | | | | | | |
| 3. 관련자 | | | | | | | |
| 구 분 | 소 속 | | 직 위 (직급) | 성 명 (생년월일) | 관리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 | 행위시 | 현재 | | | | | |
| 행위자 | | | | | | | |
| 1차감독자 | | | | | | | |
| 2차감독자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확인자 | 소속 | | 직 | 성명 | (인) | | |
| 입회자 | 소속 | | 직 | 성명 | (인) | | |

《별지 제4호 서식》

| | |
|---|----------------|
| 문 답 서 | |
| 주 소 : | |
| 소 속 : | |
| 직위와 직명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 소속, 직위와 직명) |
|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 |
|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 한 기간은? | |
| 답 : | |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 |
| 답 : | |

| | |
|--|--|
| (후면) | |
|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 |
| 답 : | |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 |
| 20 년 월 일 | |
| 진술자 직 성명 (인) | |
| 감사자 직 성명 (인) | |
| 입회자 직 성명 (인) | |

《별지 제4호 서식》

| | |
|---|----------------|
| 문 답 서 | |
| 주 소 : | |
| 소 속 : | |
| 직위와 직명 : | |
| 성 명 : | (생년월일(남, 여)) |
| | (전 소속, 직위와 직명) |
|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 |
|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 한 기간은? | |
| 답 : | |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 |
| 답 : | |

| | |
|--|--|
| (후면) | |
|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 |
| 답 : | |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 |
| 20 년 월 일 | |
| 진술자 직 성명 (인) | |
| 감사자 직 성명 (인) | |
| 입회자 직 성명 (인) | |

| 현행 | 개정안 |
|---|---|
| <p>《별지 제16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서 약 서</p> <p>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p> <p><u>소직</u>은 감사공무원증을 발급(재발급) 받음에 있어,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확고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는 등 <u>행정감사</u> 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발급(재발급) 받은 감사공무원증 관리에 철저를 도모함은 물론, 공적인 업무수행시만 사용하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 대여 등 어떠한 경우라도 남용치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음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p> <p>서약자 직급 성명 (인)</p> </div> | <p>《별지 제16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서 약 서</p> <p>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p> <p><u>본인</u>은 감사공무원증을 발급(재발급) 받음에 있어,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확고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는 등 <u>자체감사</u> 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발급(재발급) 받은 감사공무원증 관리에 철저를 도모함은 물론, 공적인 업무수행시만 사용하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 대여 등 어떠한 경우라도 남용치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음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p> <p>서약자 직급 성명 (인)</p> </div> |
| <p>《별지 제17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공무원증 분실 확인서</p> <p>소 속 직 급 <u>성 명</u> (남, 여) <u>주민등록번호</u> 감사공무원증 번호 분 실 사유</p> <p>년 월 일 본 인 (인)</p> <p>위 사실을 확인합니다.</p> <p>확인자 소 속 직 위(직 급) 성명 (인) <u>주민등록번호</u> 귀하</p> </div> | <p>《별지 제17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공무원증 분실 확인서</p> <p>소 속 직 급 <u>성 명</u> <u>생년월일(남, 여)</u> 감사공무원증 번호 분 실 사유</p> <p>년 월 일 본 인 (인)</p> <p>위 사실을 확인합니다.</p> <p>확인자 소 속 직 위(직 급) 성명 (인) <u>생년월일(남, 여)</u> 귀하</p> </div>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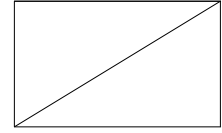
① **의견제출** : 광진구의회

② **제출일** : 2015. 10. 2.

③ **검토의견** :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규칙 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광진구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국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④ 사 유

- 광진구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국을 규칙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해도 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광진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에서도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을 제외한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규칙제명을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에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으로 개정하고 규칙 제1조에서는 광진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사무는 광진구청장의 소관사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며 외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둬으로써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2012. 2. 8. 법제처 유권해석 인용)



| | |
|-----------|-------------------------|
| 의안번호 | 제62호 |
| 의결 년월일 | 2015. 11. 6. (제241회) |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제출자 | 복지환경국장 고재식 |
| 제출년월일 | 2015. 11.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 및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규정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14. ~ 11. 2.)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수정가결안》

| 제 정 안 | 수 정 가 결 안 |
|---|---------------------------|
| <p>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p> | <p><u><삭 제></u></p>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장애 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이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긴급복지 지원항목인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지원에 대한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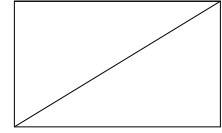
3. 미첨부 사유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 비율로 분담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가 신설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김영태

복지정책과장 강 성 구



| | |
|-----------|-------------------------|
| 의안번호 | 제63호 |
| 의결 년월일 | 2015. 11. 6. (제241회) |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출자 | 복지환경국장 고재식 |
| 제출년월일 | 2015. 11.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구체화(안 제5조)

- 現,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

나.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지원 관련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신설 :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14. ~ 11. 2.) 결과 : 접수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수정가결안》

| 개 정 안 | 수 정 가 결 안 |
|---|---|
| 제5조(위탁기간) --- <u>5년 이내에서</u> 구청장이 <u>정하는 바에 따른다.</u> | 제5조(위탁기간) --- <u>5년 이내에서</u> 구청장이 <u>따로 정한다.</u>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를 “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로 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u>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7조(지원)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 <p>제5조(위탁기간) --- <u>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u> -----.</p> <p>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p> <p>② <u>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훈련 및 교육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 규정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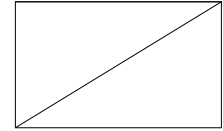
3. 미첨부 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훈련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최대비용 추측 결과 500만원 이하로 예상됨.

4. 작성자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김지은

복지정책과장 강 성 구



| | |
|-----------|-------------------------|
| 의안번호 | 제64호 |
| 의결 년월일 | 2015. 11. 6. (제241회) |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출자 | 복지환경국장 고재식 |
| 제출년월일 | 2015. 11.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 최저생계비 120% 미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

나. 지원범위 확대

- 건강보험료 부과금 월 1만원 이하 ⇒ 월 1만 5천원 이하

다. 지원기준 정비

- 광진구 거주기준 6개월 이상 및 지원대상자로만 구성된 가구
- 지원대상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된 세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편성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10. 16. ~ 11. 5.)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2조 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다음”을 “6개월 이상 광진구에 거주하며, 다음”으로, “호에 해당하는”을 “호 대상자로만 구성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거주”를 “노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 자산의 변동이 있어 월 보험료가 1만 5천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월별 지역건강”을 “월별”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 제2조제10호에 따른 ----- ----- ----- ----- ----- -----</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
| <p>제3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p> <p>1. 65세이상 <u>노인거주</u> 세대</p> | <p>제3조(지원대상) ①----- 따른 ----- ----- ----- 1만 5천원 ----- ----- ----- 6개월 이상 광진구에 거주하며, 다음 -- 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 - 1. ----- 노인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2. ~ 4. (생 략)</p> <p>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던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가 소득·재산 등 자산의 변동없이 <u>1만원</u>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지원대상자로 본다. <u>다만, 월 건강보험료가 1만5천원</u>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4조(지원 실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u>월별 지역건강 보험료산정</u>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p> <p>제5조(대상자 결정) ①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u>자의 명단</u>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 변동시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p> <p>제6조(조사 실시) ①구청장은 제5조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p> |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 <u>1만 5천원</u>----- ----- ----- ----- ----- ----- <u>다만, 소득·재산 등 자산의 변동</u> <u>이 있어 월 보험료가 1만 5천원</u> <u>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u></p> <p>제4조(지원 실시) ----- <u>따른</u> ----- <u>월별</u> ----- ----- ----- ----- ----- ----- ----- ----- -----</p> <p>제5조(대상자 결정) ①----- ----- <u>사람의</u> ----- ----- ----- ----- ----- ----- ----- ----- ----- -----</p> <p>②<u>제1항에 따라</u> ----- ----- ----- ----- ----- ----- ----- ----- ----- -----</p> <p>제6조(조사 실시) ①----- ----- <u>제2항에 따른</u> ----- ----- ----- -----</p> |

| 현행 | 개정안 |
|--|---|
| <p>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제8조(보험료 지급방법) (생략)</p> <p>제9조(환수 등)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예산 확보) ----- ----- 따른 ----- ----- -----.</p> <p>제8조(보험료 지급방법) (현행과 같음)</p> <p>제9조(환수 등) ①----- ----- 따 른 ----- -----.</p> <p>②제1항에 따라 ----- -- 사람이 ----- ----- ---- 따라 -----.</p> <p>제10조(준용) ----- ----- ----- 따른다.</p> <p>제11조(시행규칙) ----- 시행 에 ----- -----.</p> |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됨에 따라 2016년 예산을 기준 10,000천원에서 30,000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향후, 차상위계층의 증가에 따른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 제1호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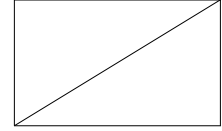
3. 미첨부 사유

- 근거규정에 따른 1억 미만의 사업

4.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주사보 홍지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 | |
|-----------|-------------------------|
| 의안번호 | 제65호 |
| 의결 년월일 | 2015. 11. 6. (제241회) |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출자 | 복지환경국장 고재식 |
| 제출년월일 | 2015. 11.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대상자 정비(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 기존의 지원 대상인 “수급자”를 “개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16. ~ 11. 5.)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급자”를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p> <p>② (생 략)</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p> | <p>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p> <p>② (현행과 같음)</p> <p>1. ----- <u>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 -----</p> |
| <p>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p> <p>① (생 략)</p> <p>1. (생 략)</p> <p>2. <u>수급자</u>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p> | <p>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p>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관련 연간 소요예산은 23,5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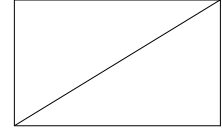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이창호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 | |
|-----------|-------------------------|
| 의안번호 | 제66호 |
| 의결 년월일 | 2015. 11. 6. (제241회) |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출자 | 복지환경국장 고재식 |
| 제출년월일 | 2015. 11.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 배출시 종량제 봉투의 규격별 무게 상한을 정하여 압축기 등을 통한 봉투의 부적정한 사용을 금지하고, 수거 작업을 원활히 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에 규정이 필요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추가 및 금액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 전환되어 같은 법을 인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감면자 봉투 지급에 관한 우리구 조례를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대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추가 예산확보 없이 감면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급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별표 6 신설)
- 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
- 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항목 추가·보완(안 별표 1)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감면자 지급 대상 규정(안 제29조제1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10. 16. ~ 11. 5.)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수정가결안》

| 개 정 안 | 수 정 가 결 안 |
|--|--|
|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별표 6에 따라 제한한다.</p> |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봉투 규격별 무게상한을 별표 6에 따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p> |
| <p>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 (방문, 인터넷 등) 하여야 하며 <u>방문신청 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u></p> | <p>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 (방문, 인터넷 등) 하여야 하며, <u>방문신청 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u></p>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②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별표 6에 따라 제한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구청장이”를 “방문신청 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별표 1을 다음의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다음의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4호부터 제18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6호 및 제2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품 목 | 규 격 | 부과금액 | 품 목 | 규 격 | 부과금액 |
|---------------|-----------------------|-------------|-------------------|-------------------|---------|
| DVD,비디오(VTR) | | 면제 | 고무통 | 지름 100cm 이상 | 5,000 |
| TV | 42인치 이상 | 7,000 | | 지름 50cm 이상 | 4,000 |
| | 25인치 이상 | 5,000 | | 지름 50cm 미만 | 3,000 |
| | 25인치 미만 | 3,000 | 공기청정기 | 가장 긴면 1m 미만 | 면제 |
| TV받침 | 3,000 | 가장 긴면 1m 이상 | | 4,000 | |
| | | 영업용 | | 15,000 | |
| 가방류 | 골프채 가방 | 3,000 | 교자상 밥상 | 4인 이상 | 2,000 |
| | 길이 50cm 이상 (캐리어 등) | 2,000 | | 4인 미만 | 1,000 |
| | 길이 50cm 미만 | 1,000 | | 차식탁(다과상) | 1,000 |
| 가스레인지 | | 면제 | 금고 | 가장 긴면 1m 미만 | 7,000 |
| 가스오븐 레인지 | 높이 1m 이상 | 5,000 | | 가장 긴면 1m 이상 | 10,000 |
| | | | 면제 | 기름탱크 | 400L 미만 |
| 가습기 | | 면제 | 400L 이상 | | 7,000 |
| 간판 | 40cmX100cm 당 | 4,000 | 김치냉장고 | 130L 이상 | 5,000 |
| | 가장 긴면 1m 이상 | 2,000 | | 130L 미만 | 3,000 |
| | 가장 긴면 1m 미만 | 1,000 | 난로 | 전기 | 면제 |
| | 고무통 입간판 | 5,000 | | 벽걸이 | 면제 |
| 거실장 (유리별도) | 길이 120cm 미만 | 4,000 | 냉장고 | 가스 | 2,000 |
| | 길이 120cm 이상 | 6,000 | | 석유 | 2,000 |
| | 길이 180cm 이상 | 10,000 | | 영업용 (대형) | 20,000 |
| | | | | 500L 이상 | 10,000 |
| 거울 | 가장 긴면 50cm 미만 | 1,000 | 노트북 | | 면제 |
| | 가장 긴면 50cm 이상 | 2,000 | 녹즙기 | | 면제 |
| 빨래건조대 (신규) | 길이 1m 이상 | 2,000 | 다리미 | | 면제 |
| | 길이 1m 미만 | 1,000 | 다리미판 | | 1,000 |
| 게시판 화이트보드 | 가장 긴면 1m 이상 | 2,000 | 도마 | 가정용 나무도마 | 1,000 |
| | 가장 긴면 1m 미만 | 1,000 | | 업소용 나무도마 | 2,000 |
| 게임기 오락기 | 전문 업소용 | 12,000 | 뒹자리(대자리, 놀이매트) | 1m ² 당 | 1,000 |
| | 50cm 미만(가정용) | 면제 | | | |
| | 50cm 이상(기타) | 3,000 | 마네킹 | 1m 이상 | 5,000 |
| | | | | 1m 미만 | 3,000 |

| 품 목 | 규 격 | 부과금액 | 품 목 | 규 격 | 부과금액 |
|-----------------|------------------------|--------|-------------------|----------------|--------|
| 모뎀 | | 면제 | 세면대 | | 3,000 |
| 목욕탕수건함 | | 1,000 | 쇼파 (안락의자) | 4인용 | 13,000 |
| 목재 | 5kg당 | 1,000 | | 3인용 | 10,000 |
| 문갑 | | 3,000 | | 2인용 | 7,000 |
| 문짝 | | 3,000 | | 1인용 | 4,000 |
| | | | | 스툴 | 3,000 |
| 물탱크 | 1톤당 | 6,000 | 수도호스 | 10m 당 | 1,000 |
| | 0.5톤 이상 | 4,000 | 스탠드옷걸이 (켓타워) | | 3,000 |
| | 0.5톤 미만 | 3,000 | 스캐너 | | 면제 |
| 믹서기 | | 면제 | 스키 | 스키 | 3,000 |
| 바둑판 | 두께 12mm | 1,000 | | 스키부츠 | 2,000 |
| | 두께 60mm 이상 | 2,000 | | | |
| 발마사지기계 | | 4,000 | 식기건조기 | 높이 1m 이상 | 5,000 |
| 방석 | 겨울용 | 1,000 | | 높이 1m 미만 | 면제 |
| | 여름용 | 500 | 식기세척기 | 높이 1m 이상 | 5,000 |
| 배기후드 | | 2,000 | | 높이 1m 미만 | 면제 |
| 베개 (라텍스베개) | | 1,000 | 식탁(나무) (의자별도) | 6인 이상 | 5,000 |
| 벽시계 | 길이 1m 이상 지름 28cm 이상 | 2,000 | | 4인 이상 | 4,000 |
| | 길이 1m 미만 지름 28cm 미만 | 1,000 | | 3인 이하 | 3,000 |
| 변기 | 양변기 | 5,000 | 식탁(대리석) (의자별도) | 6인 이상 | 10,000 |
| | 좌변기 | 3,000 | | 4인 이상 | 7,000 |
| 병풍 | 2폭당 | 1,000 | 신발 | 부츠,장화,인라인 | 1,000 |
| 보일러 | 16kcal/h 이상 | 12,000 | 신발장 | 높이 1.5m 이상 | 4,000 |
| | 16kcal/h 미만 | 10,000 | | 높이 1.5m 미만 | 2,000 |
| 보행기 | | 2,000 | 싱크대 | 개당 | 3,000 |
| 복사기 (영업용프린터) | 높이 1m 이상 | 10,000 | 쌀통 | | 3,000 |
| | 높이 1m 미만 | 5,000 | 쓰레기통 | 가정용 | 1,000 |
| 블라인드 | 1m ² 당 | 1,000 | | 사무실 옥외용 | 2,000 |
| 비닐옷장 (비키니옷장) | | 3,000 | 아이스박스 | 50L 이상 | 3,000 |
| 비데 | | 1,000 | | 30L 이상 | 2,000 |
| 서랍장 | 5단 이상 | 5,000 | | 30L 미만 | 1,000 |
| | 4단 이하 | 3,000 | 안마기 | | 2,000 |
| 선풍기 | 업소용(스텐드형) | 3,000 | 안마의자 | | 10,000 |
| | 가정용 | 면제 | 액자 | 가장 긴면 50cm 미만 | 1,000 |
| 세단기 | 높이 1m 이상 | 4,000 | | 가장 긴면 50cm 이상 | 2,000 |
| 세탁기 | 10kg 이상 | 4,000 | | 가장 긴면 100cm 초과 | 3,000 |
| | 10kg 이하 | 3,000 | 온수기 | | 2,000 |

| 품 목 | 규 격 | 부과금액 | 품 목 | 규 격 | 부과금액 |
|------------|----------------------|------------------|-----------------|---------------------|--------|
| 어항 | 영업용, 2m 이상 | 15,000 | 자동판매기 | 음료 담배 | 15,000 |
| | 가장 긴면 1m 이상 | 5,000 | | 자가 소형 | 3,000 |
| | 가장 긴면 1m 미만 | 3,000 | 자전거 | 성인용 | 4,000 |
| 에어컨 | 264m ² 이상 | 8,000 | | 아동용 2륜 | 3,000 |
| | 66m ² 이상 | 5,000 | | 아동용 3륜 | 2,000 |
| | 66m ² 미만 | 3,000 | 장난감 | 길이 50cm 이상 | 2,000 |
| 에어컨 실외기 | 1m 이상 | 10,000 | | 길이 50cm 미만 | 1,000 |
| | 1m 미만 | 면제 | 장롱 | 120cm 이상 | 15,000 |
| 오디오 | 본체 1m 이상 | 4,000 | | 90cm 이상 | 10,000 |
| | 본체 1m 미만 | 면제 | | 90cm 미만 | 7,000 |
| | 스피커 1m 이상 | 1,000 | 장식장 | 높이 120cm 미만 | 4,000 |
| | 스피커 1m 미만 | 면제 | | 높이 120cm 이상 | 6,000 |
| 오르간 | 전자식 | 5,000 | | 높이 180cm 이상 | 10,000 |
| | 일반 오르간 | 10,000 | | 오디오용 | 3,000 |
| 온풍기 | 264m ² 이상 | 8,000 | 장판 | 3.3m ² 당 | 2,000 |
| | 66m ² 이상 | 5,000 | | 전기장판 (1인용) | 2,000 |
| | 66m ² 미만 | 3,000 | | 전기장판 (2인용) | 3,000 |
| | | 옥 자석 온수 등 1인용 | | 4,000 | |
| | | | | 옥 자석 온수 등 2인용 | 7,000 |
| 욕조 | 일반용 | 5,000 | 재봉틀 | (재봉틀대) | 2,000 |
| | 유아용 | 3,000 | 전기담요 | 1인용 | 1,000 |
| 우산 | 일반용 | 1,000 | | 2인용 | 2,000 |
| | 어린이용 | 면제 | 전기밥솥 | (보온밥솥) | 면제 |
| 유리 | 0.5m ² 당 | 1,000 | 전기판넬 | 3.3m ² 당 | 2,000 |
| 유모차 | 1인용 | 2,000 | | | |
| | 2인용 | 4,000 | 전자레인지 | | 면제 |
| 유아용 보행기 | | 1,000 | 전화기, 휴대폰 | | 면제 |
| 유아용 자동차 | | 2,000 | 정수기 | 높이 1m 이상 | 4,000 |
| 의자 | 1인용 | 2,000 | | 높이 1m 미만 | 면제 |
| | 장의자 | 4,000 | 조명기구 (모든 규격) | 폭, 높이 1m 이상 | 2,000 |
| | 바퀴 대형 | 4,000 | | 폭, 높이 1m 미만 | 1,000 |
| | 바퀴 소형 | 3,000 | | 상드레아 | 2,000 |
| 이불 | 겨울용 | 2,000 | 진열대 | 1m ² 당 | 3,000 |
| | 여름용 | 1,000 | 책꽂이 | 4단 이하 | 2,000 |
| 인형 | | 1,000 | | 2단 이하 | 1,000 |

| 품 목 | 규 격 | 부과금액 | 품 목 | 규 격 | 부과금액 |
|----------------|---------------------|---------|--|-------------------|--------|
| 찬장 | 폭 130cm 이상 | 10,000 | 탁자 | 협탁 | 2,000 |
| | 폭 120cm 이상 | 7,000 | | 2인용 | 3,000 |
| | 폭 90cm 이상 | 5,000 | | 응접용 | 3,000 |
| | | | | 10인용 미만 | 6,000 |
| 폭 90cm 미만 | 3,000 | 10인용 이상 | | 8,000 | |
| 창문 | | 2,000 | 탈수기 | 가정용 | 면제 |
| | | | 라켓 | 테니스 라켓 | 1,000 |
| 책상 (유리별도) | 서랍없음 | 3,000 | | 배드민턴 라켓 | 500 |
| | 편수 | 5,000 | 텐트 | 4인용 미만 | 3,000 |
| | 양수 | 7,000 | | 4인용 이상 | 4,000 |
| | 컴퓨터책상 | 3,000 | 토스터기 | | 면제 |
| 책장 | 90cm X 180cm 이상 | 8,000 | 캐비닛 (파일) | 90cm×180cm | 4,000 |
| | 90cm X 180cm 미만 | 4,000 | | 4단 이상 | 3,000 |
| | 4단 이하 | 2,000 | | 3단 이하 | 2,000 |
| 천막 | 길이 6m 미만 | 5,000 | 파티션 | 1m ² 당 | 2,000 |
| | 길이 6m 이상 | 7,000 | 팩시밀리 | | 면제 |
| 청소기 | 영업용 | 4,000 | 팬히터 | 벽걸이형 | 2,000 |
| | 가정용 | 면제 | 프린터(복합기) | 가정용 | 면제 |
| 침대 | 1인용 매트리스 | 5,000 | 피아노 | 일반 | 15,000 |
| | 2인용 매트리스 | 8,000 | | 디지털 | 5,000 |
| | 1인용 침대틀 | 5,000 | 항아리 | 높이 50cm 이상 | 3,000 |
| | 2인용 침대틀 | 7,000 | | 높이 50cm 미만 | 2,000 |
| | 유아용 | 3,000 | 행거 | 1단 행거 | 2,000 |
| | 어린이 2층 | 15,000 | | 2단 행거 | 3,000 |
| | 1인용 돌, 옥, 황토 | 20,000 | 헤어드라이어 | | 면제 |
| | 2인용 돌, 옥, 황토 | 30,000 | 헬스기구 | 런닝머신 | 15,000 |
| 카세트라디오 | 면제 | 헬스자전거 | | 7,000 | |
| 카시트 | 2,000 | 스텝퍼 | | 4,000 | |
| 카페트 | 3.3m ² 당 | 2,000 | 화분 | 지름 50cm 미만 | 1,000 |
| | | | | 지름 50cm 이상 | 2,000 |
| 커튼 | 2m 미만 | 1,000 | 화장대 | | 3,000 |
| | 2m 이상 | 2,000 | 화장품대 (경대) | | 1,000 |
| 커튼봉 | | 1,000 | 화환 | | 3,000 |
| 커피포트 | | 면제 | 환풍기 | 가정용 | 면제 |
| | | | | 업소용 (대형) | 3,000 |
| 컬러박스 (공간박스) | 2단 미만 | 1,000 | 힐체어 | | 3,000 |
| | 3단 이상 | 2,000 | 휴대폰충전기 | | 면제 |
| 컴퓨터 | | 면제 | 라지에타 | | 4,000 |
| 킥보드 | | 2,000 | ※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의한다. | | |
| 탁구대 | | 7,000 | | | |
| 타이어 | 지름 1,100mm 이상 | 5,000 | | | |
| | 지름 600mm 이상 | 5,000 | | | |
| | 지름 600mm 미만 | 3,000 | | | |

[별표 6]

50ℓ 이상 종량제 봉투 무게상한
(제8조제2항 관련)

| 용 도 | 규 격 | 무게상한 |
|-----------------------|------|------|
| 종량제 봉투 (사업장생활계 포함) | 50ℓ | 13kg |
| | 75ℓ | 19kg |
| | 100ℓ | 25kg |

* 폐기물 배출 밀도 0.25kg/ℓ 이하

[별지19]

| | | | | |
|--|---|-------|-------|---------|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방문) | | | | 처리기한 |
| | | | | 즉 시 |
| * 굵은 선안 *표에 기재(신청인) | | 접수번호 | | |
| * 성 명 | | * 상 호 | | |
| * 연 락 처 | | * 주 소 | | |
| 배출내역 | * 폐기물명 | * 규 격 | * 수 량 | 수 수 료 |
| | | | | 원 |
| | | | | 원 |
| | | | | 원 |
| | | | | 원 |
| | | | | 원 |
| | | | | 원 |
| | 합 계 | | | 원 |
| * 배출 예정일 | 년 월 일 시 | | | |
| * 배출 장소 | | | | |
| 수수료인증란 | [안내] ※ 신고하신 품목(크기)과 실제 품목(크기)가 다르면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접수 주민센터 |
| | |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 |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또는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 (방문, 인터넷 등) 하여야 하며 <u>구청장이</u>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p> <p>제29조(수수료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u></p> |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별표 6에 따라 제한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대형폐기물 : ----- ----- ----- <u>방문</u> <u>신청 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u> -----</p> <p>제29조(수수료 감면) ①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 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p>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예산편성 근거규정과 생활폐기물 배출 무게 상한제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 규정,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및 금액을 정비하는 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감면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지급 하고 폐기물 수거를 원활히 하는 안으로 이로 인해 특별한 비용 발생사항은 없으므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청소과 행정7급 이충주

청소과장 이 상 욱